

종업원 퇴직위로금

Q 종업원의 퇴직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아래 사항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1.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맞는지요?
2. 퇴직소득이라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별도로 기재하나요?
3. 퇴직연금(DB)가입자로 과세이연되어 세금공제를 하지 않는데 퇴직위로금부분에 대한 금액만큼 원천징수를 별도로 해야하는지요?

A 종업원의 퇴직을 명목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퇴직금에 해당하므로 다른 퇴직급여와 합산하여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합산 기재하면 되며, 퇴직연금에 의해 과세이연되는 부분을 제외한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부분은 회사가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 비상장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Q 양도인 : 일본 법인(비거주자)

양수인: 내국인

일본 법인이 가지고 있는 국내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수 받으려고 하는데 이때 증권거래세와 양도세 세율, 그리고 양도세를 원천징수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법률(조문)을 알고싶습니다. 양도인이 비거주자라 거주자와는 다른 부분이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과세를 하는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가 열거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의 과세방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와 소득세법 제121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비용공제

- Q** 1. 상담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2. 국외에 체류중인 비상장 법인(부동산/임대업)의 대표이사(1인주주 이면서 급여소득 신고)가 국내에 납세관리인이 없는 관계로 임차인 변경으로인한 임대차 계약시 국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왕복 항공료등을 위 부동산 임대업의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A** 국외 체류자가 국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위해 발생하는 항공료는 임대사업과의 직접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조건 만족 시 환불

- Q** 당사는 인터넷 교육 업체입니다.
당사의 제품 중 조건 충족 시 환불 제품이 있습니다.
가령 8만원 제품을 한달간 사용하고 사용중 몇시간이상을 공부하고,
한달 종료 후 사용후기를 올리는 경우 전액 환불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조건 충족 후 환불받아가는 경우가 약 70프로정도 됩니다.
여기서 이 환불 금액을 매출 취소로 처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개인별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판매장려금 성격으로 처리해도 될지 좀 애매한데 어찌하면 될지요?
- A** 해당 제품을 반품받지 않고 조건만 충족되면 환불해주는 경우가 70%이면, 매출취소는 아니고 소득활동이라고 판단되며,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